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19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운하 · 강경숙 · 김재원 · 김준형 · 정춘생 · 신장식
이해민 · 서왕진 · 박은정 · 차규근 · 백선희 · 김선민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5. 5. 1.

3. 회 부 일 : 2025. 5. 2.

※ 의안번호 : 103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는 주택난 · 교통난 ·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수도권의 과중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이나,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

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정 전반과 행정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법률 제19563호, 2024.7.0.19.)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였으나, 국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분리해야 함으로써, 회의를 통해 입법 활동을 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삭제).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1.10.14.) 시 도입된 것으로, 이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 소요, 불편 및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¹⁾.

현행법 제22조의4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2023.10.6.)된 「국회세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9.24.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

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대상으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이전 대상 위원회의 회의 실, 이전 대상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 사무실,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도서관 분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도록 하고 있음²⁾.

동 규칙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로, 부지면적은 약 631,000m²임³⁾.

2025년 6월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와 기획

2)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1. 정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m²

재정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기본설계 및 사업자 선정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⁴⁾.

동 개정안은 국회 분원의 설치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원화될 경우 회의를 통한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분원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18)」의 제정⁵⁾을 통해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⁶⁾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2004.10.21, 사건번호 2004헌마 554·566 병합)⁷⁾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

4) 2025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은 토지매입비(1035억원), 기본설계비(121억원) 및 일반연구비(1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편성되었음.

5) 동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목적으로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려는 내용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18)」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6)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18)」 제1조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하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요지 주요내용 발췌>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중략)...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중략)...헌법사항에 속한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

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회 및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 이전과 직결되므로 법률 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의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차원의 검토와 더불어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18)」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